

충청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3. 9. 6.

나. 회부일자 : '93. 9. 6.

3.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공포('93. 2. 24)에 따른 후속조치사항과 그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므로써 광고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

4. 주요골자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4건 )
  - 옥상간판 표시지역의 확대 : 상업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시장.군수 권한위임사항의 확대 : 군사시설 차폐용간판규격 설정권 군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경제시설의 차폐용간판 규격설정권

- 지상에서 표시되는 애드벌룬 허가수수료 규정삭제  
(신규표시허가 금지)
- 플래카드 신고수수료 규정삭제(현수막으로 통폐합)
-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 개선( 5건 )
  -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공공시설물로 인정
  - 타광고물과의 형평을 고려, 이.미용업소표지등 신고수수료  
경감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보완
    - 교육위탁기관의 교육계획서 수립.제출기한의 개선 :  
1월말 → 2월말
    - 교육실시공고기한의 개선 : 2월말 → 3월말
  - 광고물의 안전도검사를 수탁.대행하는 민간단체 소속직원  
에 대한 신분증교부
  - 과태료부과기준의 신설

## 5. 검토의견

### [ 보고자 전문위원 안창국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서 광고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져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상간판을 상업지역안에서만 표시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공장  
밀집지역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공업지역안에서도 옥상간판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며,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의 보완 개선사항으로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보완코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설치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할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승인하여 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